

2024년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용자지원 사업 안내

II.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

○ 용자조건

용자목적	한도액	용자기간 및 상환방법	이율
환경개선	시설당 최대 3천만원	· 3년 거치 4년 상환 ·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	변동금리
시설이전	시설당 최대 1억원	· 3년 거치 4년 상환 ·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	

* 용자지원 시설의 폐원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용자지원금 회수

○ 용자제한 : 용자지원 금융기관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

III. 용자기관 및 자원 등

○ 용자기관 : 전국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지점

○ 자원 : 공공자금관리기금(기획재정부)

IV. 용자 절차

- ① 용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환경개선비 용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한다.
- 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와 용자 지원금을 결정하고 환경개선 용자추천 결정통지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발급한다.
- ③ '21년도 ~ '23년도에 용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'24년도에 또다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용자 요청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,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용자추천 결정통지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'16년 ~ '23년 환경개선으로 용자받은 어린이집이 시설이전을 위한 용자를 다시 신청한 경우 종전의 용자 원리금은 상환하여야 한다.

1. 사업 개요

○ (목적) 사회복지 법인, 법인·단체 등, 협동, 민간,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용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※ (근거) 영유아보육법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및 동법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(용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)

○ (사업내용)

- 용자규모 : 5.6억원(공공자금관리기금)/1월 2.8억, 6월 2.8억 교부
- 용자대상 :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 등, 협동, 민간, 가정 어린이집

○ (용자기준) 시설당 최대 3천만원(환경개선), 시설당 최대 1억원(시설이전)

○ (지원내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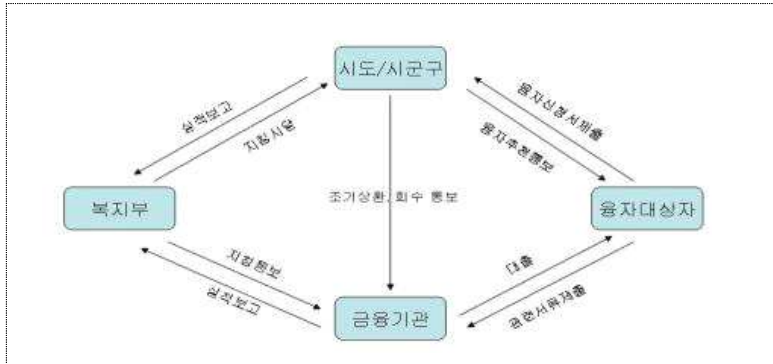
- 환경개선 : ①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②놀이시설 개선 ③실내공기질 개선 ④노후시설 개선(석면함유 시설개선, 실내·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,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, 방수·전기공사, 난방개선 등)
 - 시설이전* : 신축비, 건물·부지 매입비, 임대료 등
- * (시설이전)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(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시설이전이나 전·월세 계약 만기로 인한 시설이전의 경우 지원대상 아님)

○ (재무회계)

- 환경개선 용자 원금 및 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가능*
- *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항목 장기차입금(422목) 및 세출항목 장기차입금 상환(612목)에 해당할 경우 환경개선 용자 원금·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가능
- 다만, 원칙적으로 시설이전 용자 원금 및 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불가하나, 건물용자금 이자 지급*은 가능
- *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('19.2월)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제반 기준 준수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전, 신증축하는 경우 건물용자금 이자 지급 가능. 단, 건물 용자한 경우에 한함

- ④ 환경개선 용자추천 결정통지서 발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등 용자와 관련된 증빙서류 허위 작성 및 용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용자금이 회수되며, 제한된 기금의 운용 소진 시 용자추천과는 별도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- ⑤ 환경개선 용자추천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어린이집 대표자는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단, 용자추천 결정통지서와는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.
- ⑥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불가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용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한 시·군·구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해당 금융기관은 용자추천자에 대하여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검토 후 용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<업무처리 흐름도>



IV. 승계 조건 및 절차

□ 승계 조건

- 환경개선자금(공공자금관리기금)을 용자받은 기존 어린이집 대표자는 신규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용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

- 따라 승계하여 원리금 상환 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
- 이 경우, 승계자(승계 받는자)는 종전 채무자의 고유번호와 동일하게 '고유번호중'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함

□ 승계 절차

- ① 승계자(승계 받는자)는 별지 제7호 서식(용자지원금 승계신청서)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- 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위승계 조건에 합당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(용자지원금 승계확인서)을 발급
- ③ 용자지원금 승계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위승계자(승계 받는자)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용자지원금 승계 신청을 하여야 함

V. 행정사항

□ 자금 운용

- 시·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용자규모 내에서 운영한다.

□ 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

- 용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는 용자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추천을 받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용자목적에 의거 용자금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금융기관은 용자지원 현황 및 상환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, 기한 내 용자지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용자지원 어린이집의 폐원, 대표자 변경, 용자지원금과 실제 사용금액의 차이가 있을 시 그 차액을 조기에

규정 등에 따라 용자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Q6. 하나의 민간 어린이집 등이 환경개선을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, 노후시설·공기질·놀이시설 개선, 석면함유 시설개선 등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?

A6. 환경개선의 경우 동일 연도 내에 시설당 3천만원까지 용자지원이 가능하며, 용자한도 내에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7.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 사후에 동 사업에 의한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?

A7. 이미 시행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, 동 사업에 의한 용자지원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만이 지원가능 합니다.

* 용자지원 이전에 시행한 환경개선 비용을 사후에 용자지원을 받아 충당할 수 없음

Q8. 민간 등 어린이집이 신청한 사업은 모두 지원가능한지?

A8. 동 사업은 해당 시·군·구의 지원 필요성 검토, 금융기관의 여신과정 검토 및 한정된 예산 등으로 용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예컨대, 시설의 사업 신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추천서가 발급된 경우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용자 미지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Q9. 이미 다른 용도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용자지원이 되는지?

A9. 시설의 용자신청은 1차로 해당 시·군·구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며(필요성에 의한 검토), 추후 금융기관의 여신과정에 따른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.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 여부 및 금액에 따라 용자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Q10. 별도의 용자사업 신청기간이 있는지?

A10. 현재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, 한정된 예산과 용자지원 결정금액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Q11. 용자지원금을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지?

A11. 용자지원금 중 **환경개선**의 경우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예산 장기차입금(422목) 및 세출예산 장기차입금 상환(612목) 규정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가능하나,

- 시설이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할 수 없으며, 다만 건물용자금 이자 지급*은 가능합니다.

*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('19.2월)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제반 기준 준수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전, 신증축하는 경우 건물용자금 이자 지급 가능. 단, **건물용자한 경우에 한함**

※ '17.3.1.이전에 **환경개선비** 용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용자금이 남아있다면 어린이집 회계(장기차입금 상환(612목))로 상환 인정(다만, 시설이전비 용자 지원은 상환 불가)

Q12. 이전 연도에 환경개선 용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원금 상환 전에 다시 환경개선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?

A12. 이전 연도에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원금 상환 전인 어린이집이더라도, 다른 연도에 다른 사업내용의 환경개선비를 용자신청 할 수는 있습니다. 다만, 동 용자신청에 대해서는 1차로 해당 시·군·구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며(필요성에 의한 검토), 추후 금융기관의 여신과정에 따른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지며,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 여부 및 금액에 따라 용자추천이나 용자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 ex) '16년에 환경개선비(ex)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)로 3천만원을 용자받은 어린이집이, 원금 상환 전인 '18년에 다른 내용의 환경개선비(ex)석면함유시설개선)에 대해서 용자신청은 할 수 있음. 다만, 동 신청에 대해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용자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, 시군구의 용자추천이 있어도 금융기관의 여신검토에 따라 용자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

** 단, 이전 연도에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이 시설이전비를 용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원받은 환경개선비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함